

제64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

1. 일 시 : 2020. 10. 16(금) 11:00~11:30

2. 장 소 : 금강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 자문 및 심의안건

- 가.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나.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성명	서명	성명	서명
고수현	고수현	신동호(거성)	신동호
이원식		유익종(대명)	유익종
이승남(광도)	이승남	김해일(효성)	
임무송	임무송	허준범(자룡)	
박혁하	박혁하	김대환	
박성민	박성민		

제6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10. 16화(금) 11:00-11:3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고수현, 신동호(거성), 이승남(광도), 임무송 박혁하, 유익종(대명), 박성민 이상 7명>

< 불참석자 : 김대환, 이원식, 김해일(효성), 허준범(자룡) 이상 4명 >

< 배석자 : 김종현, 신한국, 박수인 이상 3명 >

신한국 :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 의원 11명 중에서 참석의원 7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수현 :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4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두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2020-4차 규정심의위원회와 14일 2020-13차 교무위원회 서면결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개정(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학칙 개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인 : 자료에 의한 제안 설명
(대학원 학칙 변경에 따른 학생 의견 수렴 : 9월 10일~16일)

고수현 :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하 : 박사 과정 수업 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수인 : 공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 개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고수현 : 서울소재 대학은 보통 2년, 국립대학은 아직 3년으로 수업 연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도 사립대학인 만큼 추세에 맞춘 규정 개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유익종(대명) : 학과 폐지 및 신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건가요?

박수인 :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진한 내용입니다.

고수현 : 장학제도 개선만으로는 학생들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전공인 상담관련 전공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실시 될 수 있는 대학원 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평가 요소인 모집 충원율도 신경 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의원 전원 : 동의합니다.

고수현 : 모두 동의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인 : 자료에 의한 제안 설명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학생 의견 수렴 : 9월 10일~16일)

고수현 :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종(대명) : 대학원 학생 중에서 금강대학교 학부생 출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수인 : 절반 정도의 비율에 다소 미진한 편입니다.

유익종(대명) : 현재 학부 과정에서의 홍보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도 그에 뒤지지 않는 홍보활동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찰에 팸플릿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진다면 신도 분들 중에서도 많이 지원 하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임무송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학교 대학원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커리큘럼 구성 시 사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으니, 경영이나 인사와 관련 된 과목들이 학교 교육 과정으로 편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혁하 : 시행세칙 제35조 논문제출자격에서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항목이 추가 되었는데, 기존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박수인 : 기존 수료자는 모두 연구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임무송 : 제11조 3에 첫 학기에 휴학 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허가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분에서 계속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광도 : 첫 입학을 하고 학생이 건강 상태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한 규정 개정이므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수현 : 모두 동의하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 전월 : (전월) 동의합니다.

고수현 : 그럼 금일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제64차 대학평의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친다.>